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처리 기한	5일
자 동 차 소 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감면신청 자 동 차	차량번호	용도	영업용, 비영업용				
		종류	승용, 화물, 승합, 이륜차				
	배기량	cc	적재정량	kg	승차인원	명	
장애인(국가유공자등) 성 명 및 관 계		의 본인 · 배우자 · , 부모 · 자녀 · 자녀의 배우자 · 형제자매					
감 면 사 유		장애의 종류 및 등급(국가유공자) : (최초등록일: . .)					
기존감면 차량번호		※ 기존 감면차량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 이전하거나 말소하셔야 합니다(공동명의차량 제3자매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제2조 및 전주시세 감면조례 제2조, 제3조에 의거 취득세 · 자동차세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장 귀하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아래 유의사항(감면 및 추정규정)을 꼭 읽어보세요!!							

감면 및 추정 규정 안내

1. 감면대상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최초 감면 신청하는 1대로 한정한다. 단,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17조에 따른 장애감면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 감면 배제
- ※ 취득세 및 자동차세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함(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전라북도세감면조례)
- (기존 1~3급)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인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단 유족은 감면대상 아님)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애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도, 중등도, 경도)
 - 보훈대상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가 상이등급 1~7급 경우 - 취득세 및 자동차세 50%감면

2. 감면차량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3. 추정사유 및 자진신고 안내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과 공동등록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 분가시 면제된 취득세 추정 (단,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시 추정 제외)
 - 대체취득의 경우 종전 감면차량(공동명의차량 제3자에 매각)을 신차의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미처분시 추정
 - 자동차세는 기간에 상관없이 세대분가일 부터 과세 전환
- ※ 감면 후 추정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시 가산세는 추징하지 않음